

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손 자 용

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1년 6월 3일 김영주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의 대표도서관에 대한 지도 지원을 통하여 충청북도 내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와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노력할 것과 도서관 시책수립 업무를 지원하고 그 실행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이 필요하며,
- 이에 따라 도서관발전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담당할 대표도서관을 설립·지정하여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, 충청북도의 책무(안 제1조 ~ 제3조)
- 대표도서관의 책무, 설치, 소관업무 및 자료제출(안 제4조 ~ 제7조)

-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의 임기
(안 제9조 ~ 제10조)
-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 위원회의 회의 등(안 제11조)
- 업무의 위탁(안 제15조)

4. 검토의견

금번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와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노력하기 위해 「도서관법」에 의거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대표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

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5조에서는 충청북도지사 소속하에 대표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,
-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대표도서관의 소관업무, 자료 제출, 운영규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9조에서는 충청북도 관할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,
-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위원의 임기, 회의, 간사, 수당 및 여비, 운영규칙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15조에서는 대표도서관을 지정,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

록 규정하고 있음.

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도서관 정책의 발전과 충청북도 내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와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대표도서관과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. 끝.